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23호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 1. 13.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그 밖의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 기준 신설(안 제9조제7항 및 별표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명확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제15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8. 27.(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는 군”을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을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의장”이라 한다)”를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지체없이 군수”를 “지체 없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의 범위”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발의의원”을 “발의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상임위원회”를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조사 발의”를 “조사발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6조부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로, “소속행정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 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기관, 다만,”을 “기관.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인,”을 “법인.”으로, “업무, 회계, 재산”을 “업무·회계·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호협의를”를 “상호 협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범위내”를 “사무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구성”을 “의회 구성”으로 한다.

제7조 중 “검토후”를 “검토 후”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

회”로,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로, “출석증언”을 “출석·증언”으로, “경유하여 해야”를 “경유하여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을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유없이”를 각각 “사유 없이”로, “법 제41조 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구분중”을 “구분 중”으로 한다.

제9조의3 중 “법 제49조 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을 “관하여는 영 제45조”로 한다.

제10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대상현장이나 기타”를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본회의 의결”을 “본회의나 감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할수”를 “기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

의”를 “본회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저해 되거나”를 “저해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게 된”을 “알게 된”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해당기관”을 각각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 증언 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 선서 거부시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나. 서류제출 불응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2.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하며,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하 "의장"이라 한다)-----
----- 지체 없이 고
홍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조사) ① -----
3분의 1 이상-----
----- 행정
사무 중 ----- 행정
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 조사
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 발의 의원-----

③ -----
----- 지체 없이 -----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④ ----- 휴회 중-----
----- 조사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
소속 행정기관-----
3. 법 -----
4. 법 제117조제2항 -----

----- 기관. 다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법인. -----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 업무 · 회계 · 재산-----.

② -----

----- 상호 협의-----.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사무범위 내-----

② ----- 의회 구성-----.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 검토 후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 계속 중-----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
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
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
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
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
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
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
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

수사 중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출석·증언

경유하여야

3일 전

② (현행과 같음)

③

의
견 진술일 등의 1일 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신설>

제9조의 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생략)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④ _____

_____ 사
유 없이 _____

_____ 사유 없이 _____
_____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4항_____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의 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그 밖의 _____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3(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감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

구분 중

제9조의 3(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법 제49조제3항

관하여는 영 제45조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대상 현장 이나 그 밖의

제11조(공개의 원칙) 본회의나 감사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기할 수

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본회의나 -----

제13조(주의의무) ① -----

----- 저해되거나 -----

② -----
----- 알게된 -----
----- 사유 없이 -----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

----- 지체 없이 -----
-----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서 보

② ~ ③ (생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기관-----

----- 해당 기관

해당 기관-----
③ ----- 해당 기관-----

----- 지체 없이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

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

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

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대리 출석·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